

2015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(홍보팀, 조리팀 종합감사 등 특정감사 3건)

번호	감사대상	처분요구	지 적 내 용	조 치 결 과
1-1	□□□□팀 (15.5.26-6.12)	주의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시기구(TFT)운영기간 관리 부적정 - 내 용 · □□□□팀은 한시적인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조직은 승인을 받지 않고 1년이상 운영 하는 등 임시기구 운영이 부적정하게 관리되어, 운영기간이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득 한 후 존속할 수 있도록 관리 하도록 주의 조치함(주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시적 임시기구 리스트 작성 관리예정 부득히 규정기간 초과시 이사회 승인 후 진행예정
1-2	□□팀 (15.5.26-6.12)	주의(4) 시정(1) 개선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겸직 및 외부강의 관리지침」 미준수 - 내 용 · □□팀 직원들 일부는 겸직 및 외부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나, 김○○차장, 오○○과장, 홍○○과장은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직 활동을 업무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관련규정을 미 준수 하여 엄중 주의 촉구함(주의) · 또한 해당팀은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과 과오 지급된 금액을 환수 조치 할 것(시정,개선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□□팀 전직원 교육 실시 - 겸직활동 업무출장처리 과오금액 환수 조치 예정

번호	감사대상	처분요구	지 적 내 용	조 치 결 과
1-3	□□팀 (15.5.26-6.12)	징계(1) 주의(1) 사정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약규정 미 준수 및 사후원가정산 검토 부실 - 내 용 · □□팀(현 □□□□□팀)은 「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제작 및 설치 용역」 관련 일부 과업내용이 변경 되었으나 변경계약 체결 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한 용역비 지급하고, 사후정산 보고서의 일반 관리비 이중 적용 등 정산오류가 발생하여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됨 · 담당팀은 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진행되는 계약건의 사후원가정산보고서를 면밀하게 검증하여 용역비가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, 현□□□□팀 장○○대리는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초과 청구된 용역비를 지급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엄중 문책을 요구함(징계)·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1/12년 과지급금 환수금액 15년도 잔금 상계처리예정 ※ 15년도 사후보고서 재검토후 재산정 시행 예정 - 징계(16.01.18) □□□□팀 장○○대리 : 감봉
1-4	□□팀 (15.5.26-6.12)	징계(1) 주의(1) 사정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고대행용역관련 계약관리 부적정 - 내 용 · □□팀(현 □□□□□팀)은 2012~13년 광고대행용역 중 내역 변경시 계약변경 등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고, 또한 2011/12년 시즌버스 랩핑 사후원가 정산 시 제외 항목인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전반적인 계약관리가 미흡하여, 관련팀장의 관리감독 철저 및 11/12시즌 과다 지급된 용역비를 환수 조치하도록 요구함 · 또한 □□□□□팀 김○○과장은 계약내역 변경 시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, 적절한 검수 절차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등 계약관리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엄중 조치함(징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1/12 시즌버스 래핑제작비 과지급금 환수 예정 - 광고대행 대상매체 검수에 대해 상시 관리체계 강화 (15년부터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 광고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선정 운용) - 징계(16.01.18) □□□□팀 김○○과장 : 견책

번호	감사대상	처분요구	지 적 내 용	조 치 결 과
1-5	□□팀 □□□□팀 (15.5.26-6.12)	주의(3) 개선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정당업자 제재 부적정 및 식자재 유자격자 운영 개선 - 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정당제재 대상업체에 대해 발주부서의 계약해지 통보 절차가 미흡하고 정확한 확인 및 검토과정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 업체가 차기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등 해당팀(담당자) 업무처리가 부적정하여, ‘식자재유자격자등록명부 및 운영 세부기준’ 의 미입고에 따른 제재방안을 강화하고,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절차를 매뉴얼화 할 것을 요구함(개선) · 또한 □□□□팀 조○○대리와 엄○○차장은 계약 담당자 및 구매파트 관리자로서, 부정당제재에 대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함(주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“식자재유자격명부 등록 운영 개정 검토 예정 -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처리 처리절차 기준 상반기 시행 예정